

2. 주요 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이 자체 생성하거나 관리 중인 건물 및 자동차 관련 정보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서로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 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항 후단 신설)

나. 목표관리 대상시설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보고서를 센터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감축 실적을 외부 감축 실적으로 사용하고, 우수한 시설의 경우에는 포상·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되도록 하고, 2025년 이후는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단서 신설)

라.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대상기관 또는 대상시설은 최초 포함 이전 연도의 평균 감축률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연도에 해당하는 감축목표만을 해당 기관의 연차별 감축목표로 설정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마. 외부감축실적 사용 한도를 현행 기준배출량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고 방법론에 수소전기차를 추가함(안 제27조제3항)

바. 공공부문이 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신설)

3. 의견제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담당 : 기후전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전략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650, 6644), FAX(044-201-6654) 또는 전자우편(loveh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0-472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8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를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16조의8제11항 신설)

-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조항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중소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opark99@korea.kr

- 팩스 : 042-472-32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44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공고제2020-87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 공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 31일 현재 채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채납자의 인적사항, 채납액 등을 국세청누리집과 세무서계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2020. 12. 9.

국 세 청 장